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11. 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0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10월 23일
- 다. 상 정 일 자 : 제67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9년 10월 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수만)

- 가. 개정이유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개정('99.1.29)으로 수입인지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 수입증지 판매인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영등포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사용료 등은 수입증지로서 납부하도록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안 제3조)
- 2)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3)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으로 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99.1.29)으로 수입인지판매인의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와 우리구도 같은 내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3조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구수입증지로 납부하되 필요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제5조의 수입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제6조의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하고 판매인의 수입증지 오염·훼손시 실비변상 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동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여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
----------	----

제출년월일 : 1999. 10. 20.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개정('99.1.29)으로 수입인지판매인 「지정제도」가 「계약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 수입증지 판매인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영등포구에 납부하는 수수료·사용료 등은 수입증지로서 납부하도록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안 제3조)
- 나.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으로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 나. 합 의 : 합의되었음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한다)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①수입증지는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②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둔다.

③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
-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1. 수입증지 요금
- 2. 발행기관명
- 3. 계기 고유번호

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판매 등) ①수입증지는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할 수 있다.

②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수입증지판매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입증지판매수수료) ①판매인에게는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매인의 판매 관련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입증지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판매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제9조(수입증지의 소인)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입증지를 관련서류에 첨부하고, 첨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체에 걸쳐 소인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증지의 교환) 판매인은 수입증지가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수입증지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